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66
----------	-----

제안연월일 : 2023. 9. .
제안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방림농공단지 오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 함에 있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방류수역 수계의 수질보전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 및 위탁근거

- 명 칭 :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 위탁근거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7조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

- 위 치 : 방림면 방림리 611-6, 611-7번지
- 시설용량 : 400m³/일
- 처리방식 : KS-MBR, HP-MBR공법(막분리공법)
- 사업비 : 8,463백만원(국비 100%)

구분	용량(m ³ /일)	사업비(백만원)	공사기간
계	400	8,463	
기존	200	3,872	'13.05.06. ~ '14.12.11.
증설	200	4,591	'19.12.19. ~ '22.02.28.

나.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방림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등 방류수를 수질기준 이하로 적정하게 처리하여 방류수역 수계의 수질보전 및 생활환경오염 방지
- 전문기술을 갖춘 민간시설에 운영관리를 위탁하여 효율적 운영 도모

다. 위탁 범위·내용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관리
 - 처리시설의 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의 적정관리
 - 기기·장비 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 등

라. 위탁기간 및 조건

- 기 간 : 2024. 2. 1. ~ 2027. 1. 31.(3년)
- 조 건 : 방류수 수질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이내 처리
(단위: mg/L)

구 분	BOD	COD	TOC	SS	T-N	T-P	TU
계획유입수질	304	234	-	269	41	6	-
방류수질	8	30	-	8	18	0.25	1 이하
배출 허용기준	10	-	15	10	20	0.3	1 이하

* B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 TOC: 총유기탄소량 / SS: 부유물질 / T-N: 총질소 / T-P: 총인 / TU: 생태독성

마.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 자 격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 선정방법 : 공개경쟁입찰
 - ※ 현 수탁업체 : (주)대신환경기술(대표 전성훈)(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바. 수탁기관의 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예산

- 소요금액 : 연간 약 735백만원 ※ 붙임1(위탁운영 원가계산서) 참조

사. 추진일정 및 방법(그간 추진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20. 12. 18.
- 입찰공고 : 2021. 1. 4.
- 용역계약 체결 : 2021. 1. 26.
- 폐수처리시설 인수인계 : 2021. 1. 26. ~ 2021. 1. 31.
- 위탁운영 : 2021. 2. 1. ~ 2024. 1. 31.까지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직영관리	장점	○ 예산 절감, 책임감 있는 운영 가능
	단점	○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 평창군 조직인력 부담
위탁관리	장점	○ 전문적인 기술 및 인력 확보 ○ 유지보수 시 전문기술을 활용한 즉각적인 대처 가능 ○ 조직인력 부담 완화
	단점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업체 변경 시 계속성 결여
검토결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는 최소 4명의 인력을 필요로 하나, 직영 시 평창군 조직의 인력 부족 및 전문성 결여의 문제점이 있으며, 공장폐수의 유입·방류수 관리, 유지보수 등 전문기술을 보유한 업체의 위탁운영이 안정적인 폐수 처리 및 수질 보전의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운영현황

- 운영인력 : 4명(환경분야 2, 기계·전기분야 2)

구 분	근무시간	근무인원	근무방법	비고
평 일	08:30 ~ 17:30	4	현장	평일 대체휴무
	17:30 ~ 08:30	4	원격(팀뷰어 앱 활용)	
주말(공휴일)	08:30 ~ 17:30	1	현장	
	17:30 ~ 08:30	4	원격(팀뷰어 앱 활용)	

나. 관계법령 발췌(붙임2)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7조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단위 : 원)

구 분		합 계	비 고	
고정비	노무비	201,765,144		
	경 비	복리후생비	11,199,636	식비, 피복비
		보험료	20,764,640	기관부담금
		교육훈련비	460,000	
		출장여비	422,400	근거리출장
		통신우편비	761,640	
		소모품비	1,390,350	
		소 계	34,998,666	
	순원가	236,763,810	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	21,308,743	순원가의 9%	
	이 운	25,807,255	순원가+일반관리비의 10%	
	총원가	283,879,808	순원가+일반관리비+이운	
	부가가치세	28,387,980	총원가의 10%	
	고정비 합계	312,267,788		
변동비	상하수도요금	3,393,930		
	수리수선비	17,946,596		
	시험분석비	55,529,549		
	약품비	81,381,641		
	지급수수료	30,749,408		
	손해배상공제보험료	3,793,900		
	변동비 합계	192,795,024		
대납분	전력비	132,961,410		
	폐기물처리비	96,441,400		
	대납분 합계	229,402,810		
운영원가 총 합계		734,465,622		

※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원가산정용역 결과(대한자치행정연구원, 2023. 9월)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대상사무)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군의 조사·검사·검정 등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업무로 구분한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노숙인 등 복지시설

2. 환경기초시설

3. 문화·관광·체육시설
4. 공원·녹지시설
5. 보건·건강증진시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등 관련 시설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8. 그 밖에 1년 이상 위탁기간인 단순 행정관리 시설물

제7조(의회의 동의)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물환경보전법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 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의 범위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사업에만 해당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단일사업장의 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기업체를 말한다)
- 5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90퍼센트 이상이 가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